

# 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제정

##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예시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사항에 대한 구비서류의 감축을 원활히 하고, 민원인에게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시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정보통신부·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한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제1항 후단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할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구비서류의 감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감축대상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민원사무처리시 준수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민원신청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때에 별표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반드시 알려줄 것
2.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 별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임을 알린 후 민원사무를 처리할 것

제4조(교육·홍보 등)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일반인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감축대상 구비서류(제2조관련)

---

1. 주민등록표초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초본 및 호적등본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6. (일반/집합)건축물대장
7. 자동차등록원부(갑/을)
8.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10. 사업자등록증명원
11. 휴업사실증명원
12. 폐업사실증명원
13. 납세증명서
14. 지방세납세증명서
15.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세목 : 자동차세)
16. 소득금액증명
17. 납세사실증명원